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 정시 나군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목차

| | |
|-----------------------------|----|
| ▶ 주요사항 | 1 |
| ▶ 전형일정 | 3 |
| ▶ 모집인원 | 4 |
| ▶ 선발비율 | 5 |
| ▶ 지원자격 | 6 |
| ▶ 전형방법 | 10 |
| ▶ 제출서류 | 14 |
| ▶ 서류제출 유의사항 | 16 |
| ▶ 지원자 유의사항 | 18 |
| ▶ 전형료 및 환불 | 19 |
| ▶ 기타 안내 | 20 |
| ▶ 지원서식 및 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 | 21 |
| ▶ 지원서식 | 23 |

주요사항

● **원서접수**

: 2025.09.22.(월) 09:00 ~ 09.26.(금) 18:00

● **지원자격**

1. ①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② 2026.02.28.까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③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공인영어 정기시험(TOEIC, TOEFL iBT 또는 TEPS)에 응시하여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고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 자

| 구분 | TOEIC | TOEFL iBT | TEPS |
|---------|---------|-----------|---------|
| 지원자격 기준 | 800점 이상 | 91점 이상 | 309점 이상 |

- ※ 청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TOEIC 400점 이상, TOEFL iBT 40점 이상, TEPS 167점 이상이어야 함
 - ▶ 2023.09.22.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 TOEIC과 TEPS는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3.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하고 그 성적을 제출한 자
 - ※ 1, 2, 3을 모두 충족해야 함. 상세 내용은 6쪽 참조

● **전형방법**

| 사정단계 | 학부성적 | 공인영어 | LEET 언어추리 | 서류평가 | 심층면접 | 합계 |
|-------------------|------|---------------|--------------|------|------|----|
| 1단계 (2.0배수 내외) | 20 | P/F | 40 | 20 | - | 80 |
| 2단계 (최종) | | 80(1단계 점수의 합) | | | 10 | 90 |

- ※ 법학적성시험 논술은 서류평가 시 고려함
- ※ 1단계 실질반영 비율은 10쪽 참조

● **심층면접 방법**

1. 제시문 관련 질의응답
2. 소통능력, 분석력, 판단력, 논리성 및 문제해결 능력 등 법학적성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모집요강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lawschool.hanyang.ac.kr>)

전형일정

| 구분 | 일시 | 안내사항 |
|---------------------|---|---|
| 원서접수 | 2025.09.22.(월) 09:00 ~ 09.26.(금) 18:00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원서접수 링크 게시(http://lawschool.hanyang.ac.kr) • 별도의 모집요강 교부는 없으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24시간 접수가능.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만 접수함 • 지원현황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22.(월) ~ 09.25.(목) 17:00 이후 ☞ 09.26.(금) 10:00, 15:00 및 마감 이후 |
| 서류제출 | 2025.09.22.(월) ~ 09.29.(월) (평일 10:00 ~ 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 또는 방문(택배 포함) 제출 【등기우편】 2025.09.29.(월) 국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우편번호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405호 입학 담당자 앞 【직접방문】 2025.09.29.(월) 17:00까지(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서류접수를 받지 않음 • 지원양식은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 단,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자는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됨 |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25.11.07.(금) 1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홈페이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발표 •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수험표는 고사 응시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함 • 고사장, 고사시간 및 기타사항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 심층면접 | 2025.11.29.(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지정 고사장 • 고사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할 것(별도 예비소집 없음) • 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만료일 이전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및 수험표(인터넷 출력) 미지참시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는 본교가 지정한 고사장 입장 완료시간까지 입장해야 함 |
| 합격자 발표 | 2025.12.12.(금) 1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홈페이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발표 •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등록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임 |
| 합격자 전자문서 등록 | 2026.01.05.(월) ~ 01.06.(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시 모집 합격자 전자문서 등록(합격자 발표 시 방법 안내) • 합격자 '전자문서 등록'은 등록의사를 밝히고 등록을 완료하는 절차로, 등록(예치)금을 납부하는 절차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합격자가 '전자문서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 합격자가 '전자문서 등록' 절차를 완료하였다더라도 등록금 납부기간(추후 공지)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
| 추가1차 합격자발표 | 2026.01.08.(목) 15: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발표(http://lawschool.hanyang.ac.kr) • 등록방법은 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
| 추가2차 이후 합격자발표 | 추후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발표(http://lawschool.hanyang.ac.kr)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전화 통보함 |
| 등록금 납부 | 추후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지정은행에 등록금 납부 • 합격자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됨 |

모집인원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
| 일반전형 | 93명 |
| 특별전형 | 7명 |
| 합계 | 100명 |

1. 지원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1개의 전형에만 지원해야 함

2.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입학자의 7%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모집함

3. 2026학년도 ‘정원외 인원(결원보충)’의 선발은 2025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인원[최종 확정일 : 2026.02.27.]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함. 다만,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함

선발비율

● 입학자의 7%이상을 특별전형 선발인원으로 정하여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에서 선발함

1. 특별전형 선발인원 7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경제적 배려 대상(구체적 지원자격은 7쪽 참조)을 3명 이상 선발함
2. 위 '1.' 항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모집인원의 40%이상은 법학이 아닌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선발함

1. 법학사 및 비법학사 복수학위가 있는 경우 비법학사로 봄
2. 법학사 취득 후 동일한 대학교 또는 타 대학교 학사과정에 학사편입하여 다른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비법학사로 보고, 대학교 재학 중 타 대학교로 일반편입하여 졸업하는 경우 수여받은 학위를 기준으로 비법학사 해당 여부를 판단함
3.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했어도 학부에서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비법학사에 해당됨
4. 비법학사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 모집인원의 40%이상은 한양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선발함

1. 타 대학교 출신자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대학교를 기준으로 함
2. 최초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신입학하여 최종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3. 일반편입학 또는 학사편입학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대학교를 기준으로 함
4. 타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타 대학교 출신자로 인정함
5. 타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지원자격

● **공통사항**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①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② 2026.02.28.까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③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공인영어 정기시험(TOEIC, TOEFL iBT 또는 TEPS)에 응시하여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고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 자

| 구분 | TOEIC | TOEFL iBT | TEPS |
|---------|---------|-----------|---------|
| 지원자격 기준 | 800점 이상 | 91점 이상 | 309점 이상 |

- ※ 청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TOEIC 400점 이상, TOEFL iBT 40점 이상, TEPS 167점 이상이어야 함
- ▶ 2023.09.22.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 TOEIC과 TEPS는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3.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하고 그 성적을 제출한 자

● **특별전형**

: 공통사항을 충족하면서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

| 대상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
| 신체적 배려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본인에 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증명서(본인)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 경제적 배려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 가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 수급가구원 • 복지급여 수급자 :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 가족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경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 사회적 배려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2조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본인) • 학력인정확인서(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 | 보훈관계 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법령에 근거한 확인원(담당자 연락처 기재)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조에 의하여 인정된 의사상으로 제5조 제5항에 따른 부상등급 결정을 받은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상자 증명서(본인)(부상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본인)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와 자율(립)형사립고는 농어촌 지역(읍·면) 고등학교에서 제외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생활기록부 (재학당시 학교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재학당시 학교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 부모의 국적관련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내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 사실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또는 소속 사회복지사의 추천서 •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 |

※ 특별전형 대상자 **제출서류는 발급일자가 2025.08.25. 이후인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보훈관련 교육지원 대상자 -“○”표시자가 보훈관계 법령(정식 명칭은 9쪽 참조)에 따른 교육 지원 대상임-

| 법령 | 조항 | 유공자 | 유공자와의 관계 | | | | 일반적 명칭 |
|-------|----------------|-----------------|----------|-----|----|----|--|
| | | | 본인 | 배우자 | 자녀 | 손자 | |
| 독립법 | 제4조제1호 | 순국선열 | × | ○ | ○ | ○ | 독립유공자 |
| 독립법 | 제4조제2호 | 애국지사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제3호 | 전몰군경 | × | ○ | ○ | × | 국가유공자 (다만, 참전유공자는 교육지원 대상자로 준함) |
| 예우법 | 제4조제1항제4호 | 전상군경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제5호 | 순직군경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제6호 | 공상군경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제7호 | 무공수훈자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제8호 | 보국수훈자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제9호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제10호 | 참전유공자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11호 | 4·19혁명사망자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12호 | 4·19혁명부상자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13호 | 4·19혁명공로자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14호 | 순직공무원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15호 | 공상공무원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16호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17호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 | × | ○ | × | |
| 예우법 | 제4조제1항18호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 | × | ○ | × | |
| 예우법 | 제73조 | 6·18자유상이자 | ○ | × | ○ | × | 6·18자유상이자 |
| 예우법 | 제73조의2 | 지원대상자 | ○ | × | ○ | × | 지원대상자 |
| 고엽제법 | 제2조제3호 및 제7조의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996.3.31편입) |
| 5·18법 | 제4조제1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 × | ○ | ○ | × | 5·18민주유공자 (2002.7.26편입) |
| 5·18법 | 제4조제2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 × | ○ | × | |
| 5·18법 | 제4조제3호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 × | ○ | × | |
| 특임법 | 제3조제1호 | 특수임무사망자 | × | ○ | ○ | × | 특수임무유공자 (2005.7.29편입) |
| 특임법 | 제3조제2호 | 특수임무부상자 | ○ | × | ○ | × | |
| 특임법 | 제3조제3호 | 특수임무공로자 | ○ | × | ○ | × | |
| 보훈보상법 | 제2조제1항제1호 | 재해사망군경 | × | ○ | ○ | × | 보훈보상대상자 (2012.7.1.시행) |
| 보훈보상법 | 제2조제1항제2호 | 재해부상군경 | ○ | × | ○ | × | |
| 보훈보상법 | 제2조제1항제3호 | 재해사망공무원 | × | ○ | ○ | × | |
| 보훈보상법 | 제2조제1항제4호 | 재해부상공무원 | ○ | × | ○ | × | |

※ 보훈관련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류

| 대상자 | 근거 | 증명서류 |
|----------------------------|---|-------------------|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8호, 제73조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법률 제11029호] |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7조의5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 제3호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제3호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제4호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 **유의사항**

1. 특별전형 대상자 **제출서류는 발급일자가 2025.08.25. 이후인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2. 국외소재 정규대학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대학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입학 후라도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전형방법

● 전형요소별 배점

| 사정단계 | 학부성적 | 공인영어 | LEET 언어추리 | 서류평가 | 심층면접 | 합계 |
|-------------------|---------------|------|--------------|------|------|----|
| 1단계 (2.0배수 내외) | 20 | P/F | 40 | 20 | - | 80 |
| 2단계 (최종) | 80(1단계 점수의 합) | | | | 10 | 90 |

※ 법학적성시험 논술은 서류평가 시 고려함

● 1단계 실질반영 비율

| 구분 | 학부성적 | 공인영어 | LEET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 서류평가 | 합계 |
|------------|------|------|------------------------|------|------|
| 명목 반영점수(점) | 20 | P/F | 40 | 20 | 80 |
| 기본점수(점) | 6 | - | 12 | 6 | 24 |
| 실질 반영점수(점) | 14 | - | 28 | 14 | 56 |
| 실질 반영비율(%) | 25% | - | 50% | 25% | 100% |

●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방법

1. 학부성적

- ▶ 반영점수 산출방법 (χ = 학부성적 백점 만점 환산 점수)

| 구분 | 반영점수 산출식 |
|---------------------|---------------------------------|
| $60 \leq \chi$ 인 경우 | 반영점수 = $6 + (\chi - 60) * 0.35$ |
| $\chi < 60$ 인 경우 | 반영점수 = 6 |

- ▶ 학사학위 취득(예정) 1개 대학의 성적만 반영함
- ▶ 반영대상 성적은 학부 전 학년, 전 과목 성적으로 함. 다만,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확정된 성적을 기준으로 함
- ▶ 편입학한 경우 최종 재적학교의 성적을 평가함
- ▶ 학부과정이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진 학과 출신자의 경우 본과 성적만 반영함
- ▶ 최종학기 성적을 포함한 평균성적이 백점만점 환산점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백점만점 환산점수를 제공하지 않거나 산출이 불가능한 대학 출신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성적을 반영함
- ▶ 성적 특이자가 있을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2.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 iBT 또는 TEPS)

- ▶ 지원자격 기준을 갖춘 경우 PASS, 지원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FAIL
- ▶ 공인영어성적이 아래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함

| 구분 | TOEIC | TOEFL iBT | TEPS |
|---------|---------|-----------|---------|
| 지원자격 기준 | 800점 이상 | 91점 이상 | 309점 이상 |

※ 청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TOEIC 400점 이상, TOEFL iBT 40점 이상, TEPS 167점 이상이어야 함

- ▶ 2023.09.22.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 TOEIC과 TEPS는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3.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영역 및 추리논증영역 반영점수 산출 방법

①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의 표준점수를 아래 공식에 적용하여 평균점수(C)를 산출한 후,

(A) 언어이해영역 환산점수 산출 = $\frac{\text{지원자의 언어이해영역 표준점수}}{\text{언어이해영역 표준점수 최상위 급간 상한점수}}$

(B) 추리논증영역 환산점수 산출 = $\frac{\text{지원자의 추리논증영역 표준점수}}{\text{추리논증영역 표준점수 최상위 급간 상한점수}}$

(C) 언어이해영역 및 추리논증영역의 환산점수 평균 산출 = $\frac{(A) + (B)}{2}$

② 평균점수(C)를 아래 표의 범위에 따른 산출식을 적용하여 최종 반영점수를 산출

| 구분 | 반영점수 산출식 |
|----------------------|---------------------------------|
| $0.95 \leq C$ | 반영점수 = 40 |
| $0.45 \leq C < 0.95$ | 반영점수 = $12 + \{(C-0.45) * 56\}$ |
| $C < 0.45$ | 반영점수 = 12 |

4. 서류평가

- ▶ 평가항목 : 학업역량, 논증력 및 소양, 인성 및 사회적 책무성, 다양성 및 비전
- ▶ 지원양식(본교 소정양식), 지원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법학적성시험 논술 등을 종합 평가함
- ▶ 초·중·고교 과정의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 출신대학 및 출신대학 유추가 가능한 동아리명 및 장학금명은 기재를 금지함
(○○처리, 기재 시 감점 조치할 수 있음)
- ▶ 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재학 관련 서류제출을 금지하며 재학여부 관련 정보 기재 시 실격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음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법학 관련 사실 시험 성적은 일체 반영하지 않으므로 성적표 및 관련 서류제출을 금지하며 관련 정보 기재 시 실격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음
- ▶ 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실격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음

<예시>

| 구분 | 기재예시 | 불이익 내용 |
|------------------|---|--------|
|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 ① 부모·친인척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 실격 |
|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 ①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 실격 |
| 광의적 직종명 기재 |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 감점조치 |

- ※ 위는 교육부 예시 사항임
- ※ 기재 예시는 단순 예시이며, 사실과 무관함
- ※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의 설명을 위한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로 인정함
- ※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감점 조치할 수 있음

5. 심층면접

- ▶ 소통능력, 분석력, 판단력, 논리성 및 문제해결 능력 등 지원자의 법학적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법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않음
- ▶ 심층면접 결시자 및 심층면접 점수가 6점(10점 만점 기준) 미만인 자는 다른 전형요소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1단계 합격자 선발

: 학부성적, LEET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서류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하고,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각각 모집인원의 2.0배수 내외에서 선발함

● 2단계(최종) 합격자 선발

1. 1단계 성적과 2단계(심층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함
2. 특별전형 선발인원 7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경제적 배려 대상(구체적 지원자격은 7쪽 참조)을 3명 이상 선발함
3. 2026학년도 ‘정원외 인원(결원보충)’의 선발은 2025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인원[최종 확정일 : 2026.02.27.]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함. 다만,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함
4. 위 ‘2.’ 항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동점자 처리기준

| 단계 | 동점자 처리기준 |
|-----|---|
| 1단계 | 동점자 모두 선발함 |
| 2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심층면접 성적 우수자 • 2순위 : LEET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성적 우수자 • 3순위 : 학부성적 우수자 • 4순위 : 서류평가 성적 우수자 |

제출서류

● **공통서류(필수 제출)**

| 번호 | 구분 | 비고 |
|----|--|--|
| 1 | 입학원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
| 2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사본은 워터마크 없는 서류제출, 16쪽 참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예정증명서 대신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2025.08.25.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다만, 해외발급 서류는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 3 | 대학 성적증명서 (※ 사본은 워터마크 없는 서류제출, 16쪽 참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기 이상 수학했던 전 과정의 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최종학기 성적을 포함한 평균성적이 백점만점 환산점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성적이 백점만점 환산점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로만 기재가 가능한 경우 담당자 서명 날인 필요 * 백점만점 환산점수를 제공하지 않는 대학 출신자는 본교 법학전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학부성적에 반영함 • 국외소재 정규대학 출신자는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성적산출 기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25.08.25.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다만, 해외발급 서류는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 4 | 공인영어 정기시험 성적표 (TOEIC, TOEFL iBT, TEP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9.22.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표 • TOEIC, TEPS는 국내 정기시험 성적표만 인정 |
| 5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
| 6 | 지원양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원서 작성 시 작성, 이외에는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 |
| | 지원자 확인 서약서 (1-1) | |
| | 자기소개서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원서 작성 시 작성(제출 시, 이를 출력하여 제출) |
| | 이력표 (1-3) | |
| | 경력사항 (1-4) | |
| | 제출서류 목록 (1-5) | |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타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서류(재학, 휴학, 수상실적 증빙 그 밖의 일체의 서류) 제출을 금함.
제출 시 실격 또는 감점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번호 | 구분 | 비고 |
|----|-----------------------------|---|
| 1 | 대학원 재적 관련 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위과정 모두에 대한 재적증명서(재학, 수료, 학위취득(예정) 등) • 2025.08.25.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다만, 해외발급 서류는 당시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 2 | 대학원 재적 관련 성적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위과정 모두에 대한 성적증명서 • 2025.08.25.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다만, 해외발급 서류는 당시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 3 | 장학금수혜 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
| 4 | 기타활동 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연수, 연구, 창작 및 동아리활동, 인턴십 등에 대한 증명서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
| 5 |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
| 6 | 공인외국어 성적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공인성적표 |
| 7 | 수상실적 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
| 8 | 자격증, 면허증, 특허증, 실용신안, 국가고시합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
| 9 | 논문 또는 저작물 증명서 및 요약본(초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 논문 또는 저작물의 요약본(초록)도 제출 |
| 10 | 재직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개월 이상)도 제출 |
| 11 | 병적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복무 중이거나 병역복무가 종료한 경우에 한함 |
| 12 | 자기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 본교 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 전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게시 |
| 13 | 특별전형 대상자 증빙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 2025.08.25.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 추천서는 제출받지 않음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1부 + 사본 1부**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원본 : 개인식별정보에 형광펜으로 표시
- 사본 : 개인식별정보에 블라인드 처리

(단, 입학원서 및 특별전형 대상자 증빙서류는 사본제출 대상이 아님)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사진, 학번, 생년월일,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명, 출신학교명이 포함되었거나 유추가 가능한 동아리명 및 장학금명, 연락처 및 집주소, 인적사항 정보가 담긴 QR코드 등

※ **워터마크 없는 서류제출** : 공통서류 2, 3번 대학 졸업(예정)증명서와 대학 성적증명서의 사본은 워터마크가 없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 인터넷 발급본

▶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할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방문하여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시하고 원본대조를 받아야 함. 원본 확인이 안 된 사본 서류는 지원자격 판단 및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2.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 ▶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대학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입학 후라도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학울 취소할 수 있음
- ▶ 영어 이외의 외국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는 학력조회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학력조회 미회신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는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해당 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다만,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www.cdgd.edu.cn)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해도 인정함

3.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4.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공통서류와 추가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6. 초·중·고교 과정의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음
7.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단, 공인어학 성적표, 공인어학 자격증은 번역 및 공증 없이 제출할 수 있음
8. 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기재한 것이 추후 발견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9.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 기재하였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자,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후에도 부정행위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학위에 대한 조회 결과 인정되지 않는 학위로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10. 입학전형 필수요소(법학적성시험 성적, 학부성적, 공인어학성적)를 위·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년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함
11. 모든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는 추후 발급기관을 통하여 조회·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본교에서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고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함
12. 합격자 중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증명서 원본을 2026.02.27.(금) 17:00까지 제출해야 함

지원자 유의사항

1.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시 나군 지원자는 정시 나군에 속한 타 대학교에 복수 지원할 수 없음
2.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모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법학전문대학원에만 등록해야 함
3.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입학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만 유효한 원서접수로 인정하며,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함
4. 원서접수 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져야 함
5.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원서를 접수하면 불합격 처리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6.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는 24시간 연락(전화)이 가능해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또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통지해야 함(변경 통지는 본인이 방문 또는 전화로 통지하기 바람)
7. 1단계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에 심층면접고사에 응시해야 하며, 수험생은 고사실에 입실하면 고사종료 시까지 출입이 제한됨
8. 심층면접고사 당일 소음을 유발하거나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휴대폰, 전자시계, 스마트워치, 태블릿,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후 고사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 만일 고사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함
9.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이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 인원과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0. 개별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11. 합격자 발표는 본인이 직접 지정된 합격자 발표일(2025.12.12.)에 본교 홈페이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hanyang.ac.kr>)에서 확인해야 하고 개별 합격통지를 하지 않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12. 2026년 졸업예정자는 2026.02.28.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됨
13.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1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 02-2220-2770)

전형료 및 환불

● **전형료**

| 전형유형 | | 전형료 | 1단계 불합격자 환불전형료 |
|------|---------------|----------|-------------------|
| 일반전형 | | 250,000원 | 50,000원 |
| 특별전형 | 신체적·사회적 배려 대상 | 100,000원 | 없음 |
| | 경제적 배려 대상 | 없음 | |

-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함
- ※ 1단계 불합격자 환불전형료는 인터넷 입학원서 작성 시 지원자가 기재한 계좌로 환불함

● **전형료 환불**

1.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

- ▶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2025.12.12.까지 환불 의사를 밝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환불 가능함

2. 기타 반환 사유

- ▶ 위를 제외한 부득이한 사유(질병, 사고 등)가 발생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시기에 따라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 신청 시기 | 환불 금액 |
|----------------------------------|-------------|
| 원서접수 마감 전 | 전형료 전액 |
|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 전형료의 70% 환불 |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후부터 심층면접고사 후 3일 이내 | 전형료의 50% 환불 |
| 심층면접고사 후 4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 ▶ 타 대학교 전형과 면접고사 시간이 중복될 경우,
- 원서접수 전에 면접고사 시간을 공지한 경우는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3.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 ▶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음
- ▶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안내

● 이의신청

: 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복은 합격자 발표일(2025.12.12.)로부터 15일 이내에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며, 그 이후 절차는 관련 법령 및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 규정과 학칙, 사정원칙 등에 의해 진행됨

●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1. 서류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들에서 지원자의 성명,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함
2. 심층면접에서 비법학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아니함
3. 심층면접 문제출제는 외부와의 교류, 통신 및 인터넷 사용이 차단된 공간에서 출제 전 기간 동안 공정관리위원의 감독 하에 실시함
4. 심층면접 시 가번호를 부여하고,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면접 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無자료 면접)
5. 심층면접 시 면접위원은 내부 교수와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면접 단위별 1인 이상 외부 면접위원을 반드시 포함함
6. 입학전형 위원 위촉에 앞서 해당 입학년도의 지원자와 개인적 친분 및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며, 개인적 친분 및 이해관계를 보유한 사람은 전형에서 제외함
7.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서식 및 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

1. 지원서식은 본인이 작성. 타인 및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자기소개서(1-2)에 출신대학 및 출신대학 유추가 가능한 동아리명 및 장학금명은 기재 를 금지함(○○처리, 기재 시 감점 조치할 수 있음)
3. 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재학 관련 서류제출을 금지하며 재학여부 관련 정보 기재 시 실격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음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법학 관련 사설 시험 성적은 일체 반영하지 않으므로 성적표 및 관련 서류제출을 금지하며 관련 정보 기재 시 실격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음
5. 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실격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음

| 구분 | 기재예시 | 불이익 내용 |
|---------------------|---|--------|
|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 ① 부모·친인척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 실격 |
|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 ①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 직자(공무원) 등 | 실격 |
| 광의적 직종명 기재 |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 감점조치 |

- ※ 위는 교육부 예시 사항임
- ※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의 설명을 위한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로 인정함
- ※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감점 조치함

6. 경력사항(1-4) 및 제출서류 목록(1-5) 작성 시, 행(줄)은 추가할 수 있으나 양식은 변경할 수 없음
7. 경력사항(1-4)에 작성된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 ※ 증빙서류는 원본만 인정함. 꼭 반환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을 방문하여 사본에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서류접수를 받지 않음

8. 지원서식 제출 시에는 지원자 확인 서약서(1-1), 자기소개서(1-2), 이력표(1-3), 경력사항(1-4) 및 제출서류 목록(1-5)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함
9. 증빙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하되, 제출서류 목록(1-5)에 기재된 목록번호 순서대로 집계 또는 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 바람
10. 문서 형태가 아닌 증빙자료(CD, 멀티미디어 파일 등)는 평가하지 않음
11. 초·중·고교 과정의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12.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자 확인 서약서 (1-1)

□ 지원자 기재사항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연락처(자택) | | 연락처(휴대전화) | |
| 학사학위 취득(예정)대학 | 학교명 : | | 학과 : |
| 졸업(예정)연도 | | 전형구분 | 일반/특별 |

※ 전형구분의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표’는 수기도 가능함)

□ 지원자 확인서약

1. 본인은 본 지원서식을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음
2. 본인은 귀교가 본 지원서식과 관련하여 내용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
3. 본인은 본 지원서식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또는 기재금지 사항을 기재한 경우 실격 또는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
4. 본인은 입학 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사지도를 위해 본 지원서식과 제출서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위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한 양 대 학 교 총 장 귀 하

| | |
|------|--|
| 수험번호 | |
|------|--|

자기소개서 (1-2)

1. 학업 역량

■ 자신의 학업 역량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 대학입학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만 기술할 것

(1)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학업 역량 및 성과

- 전체 이수 학점 중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교양 등의 구분에 따른 학점 수
-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을 선택한 기준과 이유
- 재수강한 경우 그 과목의 수와 이유 등 포함

(2) 정규교과과정 외 학습·연구 활동 및 성과

2. 사랑의 실천 활동

■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자신의 활동 경험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대학입학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만 기술할 것

- 예 : 공익활동, 봉사활동 등
- 동기, 과정, 결과 및 후속 활동 등 포함

3. 미래 비전 및 진로계획

■ 자신의 미래 비전과 진로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졸업 후 진로 및 장래 계획에 대하여 5년 및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구체적·체계적으로 기술할 것

4. 사회성·다양성 및 기타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예 :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갈등을 조정한 경험, 구성원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 등
- 사회활동 경력(직종명, 재직기간, 업무 등)
- 그밖에 강조하고 싶은 사항

경력사항 (1-4)

1. 학력 및 재직사항(학부과정과 그 이후의 학력사항 및 재직사항)

| 목록번호 | 기간 | 대학교/기관 | 전공/직책 및 담당업무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부과정 입학 및 편입을 포함한 모든 학력사항 기재
- ※ 목록번호란에는 '제출서류 목록'의 목록번호를 기재
- ※ 동일한 행에 목록번호가 2개 이상 발생할 수 있음
예) 같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목록번호와 성적증명서 목록번호
- ※ 학부과정과 그 이후의 재직사항만 기재
- ※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재직사항을 기재하고, 그 외의 재직사항은 '3. 활동내역'에 기재

2. 수상실적, 상벌사항, 자격증 등 업적물(수상내역, 장학금 수혜, 공인외국어성적, 자격증, 면허증, 특허증, 실용신안, 국가고시합격, 연구업적물 등)

| 목록번호 | 수혜일/취득일/발표일 | 내역 | 수여/발급 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부과정과 그 이후의 사항만 기재
- ※ TOEIC, TOEFL iBT 또는 TEPS에 대하여 2023.09.22.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을 기재

| 목록번호 | 징계사항 유/무 기재란 | | | |
|------|---------------------------------------|----------------------|--------------|--|
| | 대학, 대학원(일반,특수,전문대학원 포함) 재직 중 징계 여부 | 유[] 무[] | 징계내역 및 사유 | |

3. 활동내역(교육, 연수, 연구 및 창작활동, 동아리활동, 인턴십, 사회봉사활동 등)

| 목록번호 | 기간 | 활동내용 | 기관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부과정과 그 이후의 사항만 기재(봉사활동의 경우 총 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제출서류 목록 (1-5)

| 목록번호 | 제목(내용) | 발급기관명 | 발급일자 | 비고 |
|------|---------|-------|------|----|
| 1 | 지 원 서 식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 공통서류(입학원서 제외, 지원서식이 1에 해당함)와 추가 제출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목록 작성(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자기확인서 및 증빙서류 포함)
- ※ 입학원서, 지원서식, 기타서류 순으로 정리
- ※ 제출서류의 우측 하단에 목록번호 기재

※ 특별전형 지원자만 작성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지원을 위한 자기확인서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대학교 | () 대학교 ()학과 | 졸업(예정) | |
| 주 소 | | | |
| 연락처(주택) | | | |
| | 연락처(휴대전화) | | |
| 확 인 내 용 | | | |
| <p>※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자가전·월세) 등 본인이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포함 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p> | | | |
| <p>기재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학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p> | | | |
| 2025 년 월 일 | | | |
| 지원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 | |
| <p>한 양 대 학 교 총 장 귀 하</p> | | | |

| | |
|------|--|
| 수험번호 | |
|------|--|